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가합5464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규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류현정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수익권에 대하여,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담보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8. 8. 6.과 2019. 3. 8. C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D 호텔을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업부지 매입, 사업인허가 완료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보유한 미국 법인 E 유한책임회사의 주식 100%를 C의 자회사인 미국 법인 F에게 이전하면, C는 원고에게 미화 300만 달러(착수금 미화 50만 달러, 잔금 미화 25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용역계약 및 그에 관한 추가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C는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위 용역계약에 기하여 부여받은 권리를 타에 이전할 수 없고, 위반 시 미화 300만 달러를 원고에게 위약벌로 지급해야 하는데, C는 2019. 4. 30. E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위 F의 지분 전부를 G에게 처분함으로써 위 용역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위약벌로 원고에게 미화 300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는 2019. 7. 29. 그 보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수익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수익권에 관한 담보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C가 2019. 7.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C의 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H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비사업조합은 주식회사 I과 별지 목록 기재 수익권의 발생근거인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C가 갖게 된 수익권을 피고 및 주식회사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정비사업조합이 그 담보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라는 취지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기환, 판사 이용희, 판사 배다현

[별지]

H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¹⁾이 주식회사 I과 '서울 영등포구 K 대 76㎡'와 '서울 영등포구 L 대 12㎡'에 관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C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의하여 가지게 될 신탁수익금 및 이익금 채권 214억 원. 끝.

1) 소장에 첨부된 별지에는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C'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별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체결일자, 위 각 토지의 신탁원부 기재 등에 의하면 신탁계약상 위탁자는 위 정비사업조합이고 'C'는 수익자인 것으로 보인다.

